

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

2024년 1월 31일
미래·복지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안일자: 2024년 1월 9일

나. 제안자: 홍재희 의원 외 8명

다. 회부일자: 2024년 1월 22일

라. 상정일자: 제301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

미래·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 상정·의결(2024. 1. 31.)

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: 홍재희 의원)

□ 제안이유

「노인복지법」 제47조 규정에 의거 「어르신 사랑방」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관내 어르신의 자율적인 친목 및 여가활동을 강화하고,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가. 경로당 운영지원을 위한 「중식 지원용 양곡」 구체화
- “양곡¹⁾” → “쌀 및 부식비²⁾” (안 제6조제1항제2호)

1) 양곡: 양식으로 쓰는 곡식으로 미곡(쌀), 맥류(밀과 보리), 그 밖의 곡류(좁쌀, 수수, 옥수수 등), 이들 곡물의 교잡 곡물, 서류(감자와 고구마), 이들을 원료로 한 분쇄물, 가루, 녹말류 따위로 정하고 있다 (식품과학사전)

2) 부식비: 식생활에서 부식(副食 - 주식(主食)에 딸려 먹게 되는 음식물)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 (국어사전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노인복지법」 제47조,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 제24조
- 나. 협조부서: 어르신복지과
- 다. 입법예고; (2024. 1. 19. ~ 1. 23.)

4. 전문위원 검토의견 (전문위원: 권오숙)

가. 제정취지

- 「노인복지법」 제47조 규정에 의거 「어르신사랑방」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구체화하여 관내 어르신의 자율적인 친목 도모 및 여가활동 등을 강화하고,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 제정내용

- 안 제6조제1항제2호에서 경로당 운영지원을 위한 중식 지원용 양곡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음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지원 및 관리)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중식 지원용 <u>양곡</u> 3. ~ 7. (생략) ②·③ (생략)	제6조(지원 및 관리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<u>쌀 및 부식비</u> 3. ~ 7. (현행과 같음)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다. 종합의견

- 본 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지원 항목을 구체화하여 **어르신 사랑방의 운영 활성화**를 도모하고, **어르신들의 친목 활동 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,**
- 기존 중식 지원용 “양곡”은 사전적 의미에서 쌀, 밀·보리, 그 밖의 곡류 및 이들을 원료로 하는 녹말류 따위 등, 양식으로 쓰는 곡식만으로 정의되고 있는데, 이를 “**쌀 및 부식비**”로 구체화하여 식생활에서 부식(副食)을 구입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사전적 정의를 확대하여 조례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였음
- **어르신 사랑방**은 관내 노인(어르신)³⁾을 위한 교육·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율적인 친목 활동의 장소를 제공하여 **건강한 노년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심점**으로서, 본 개정안은 노인복지서비스 개선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됨

3) 관내 65세 이상 인구 현황(2024. 1월 기준)

- 총 인구수 563,058명(남자 269,822명 / 여자 293,236명)

- 동별 현황

(단위: 명)

염창동	등촌동	화곡동	가양동	발산동	우장산동	공항동	방화동	총계
41,359	73,691	191,050	61,447	35,653	43,708	29,461	86,689	563,058

5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6. 토론요지: 생략

7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※ 붙임 관계 법령 1부.

□ 「노인복지법」

제47조(비용의 보조)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□ 「노인복지법 시행령」

제47조제24조(비용의 보조) ①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
2. 법 제34조제1항제1호·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·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
3. 법 제3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
4. 법 제38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
5. 법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노인보호전문기관
6. 법 제39조의19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

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설치·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의 부담비율은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하는 때에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평가의 결과 등 당해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실적을 고려하여 차등하여 보조할 수 있다.